

입학기준	전공구분	학점이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■ 이수학점을 4학점(2과목) 이상에서 8학점(3과목) 이상으로 상향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단,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과교육영역은 6학점(2과목)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■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,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 할 수 있음(고시 제3조제5항 참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(연계전공 포함)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, 전체 중복인정 학점(15학점)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(고시 제11조 참조)</li> </ul> </li> <li>■ 기존의 “교과교육론”, “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”, “교과 논리 및 논술” 과목 중심의 교과 교육영역 운영을 “교과별 교수법”, “교과별 교육과정”, “교과별 평가방법론”, 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 개정(‘17학년도 부터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예비교원의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역량제고 필요(교원양성과정 개선 계획 수립, 2016.8.4)</li> </ul> </li> </ul>	
2021 학년도 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2009학년도부터의 기준과 동일하며, 다음 사항 변경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(연계전공 포함)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, 전체 중복인정 학점(18학점)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(고시 제11조 참조)</li> </ul> </li> <li>※ 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</li> </ul>	

## 라. 산업체현장실습

※ 관련: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13조 제1항

- 1)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담당과목의 표시과목 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**산업체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**하여야 한다.
  - 2) 위 1)에서 산업체의 범위는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에 의해 대학의 장과 교육실습이나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산업체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이다.
  - 3) 산업체현장실습의 시기, 학점부여 방법 등은 대학의 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며, 대학에서 별도의 산업체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중복 인정할 수 있다.
  - 4) 대학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**대학 입학 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산업체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**
  - 5)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**교육대학원 입학 전, 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다.**
  - 6)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- 7) 산업체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산업체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별도 조치 및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.
- ※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3.5.)에 따라 대학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기입 대상이므로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7조, 제18조제1항 및 제3항, 제20조, 제26조를 참고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마련
- 8) 산업체 현장실습이 필요한 중등 공업계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.

고시번호	표시과목
제2009-29호, 제2009-37호, 제2011-15호, 제2012-27호, 제2014-48호, 제2015-7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기·전자·통신, 기계·금속, 화공·섬유, 자원·환경, 건설, 냉동, 요업, 인쇄</li> </ul>
제2016-106호 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기, 전자, 통신, 기계, 재료, 화공, 섬유, 자원·환경, 건설, 냉동, 요업, 인쇄</li> </ul>
제2017-126호 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기, 전자, 통신, 기계, 재료, 화공, 섬유, 자원, 환경공업, 건설, 냉동, 세라믹, 인쇄</li> </ul>